

이스포츠허(전자스포츠허)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
----------	----

발의연월일 : 2024. 5. 30.

발 의 자 : 강유정 · 김영진 · 김영배
강선우 · 김한규 · 서영교
장경태 · 박 정 · 박희승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인력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42.6%이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허 분야의 사업자 또는 이스포츠허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전문인력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등).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을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이스포츠 산업에 관한 재정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u>표준계약서의 제정 · 보급</u>) ① · ② (생 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u>	제7조의2(<u>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이스포츠 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u>